

장위13-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
예비 임원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공고

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76조 및 「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 관리기준」 제13조에 따라 장위13-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 추진위원장, 예비 감사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월 30일

성 북 구 청 장

1. 열람일시 및 장소

가. 기 간 : 2026년 2월 2일(월) ~ 2026년 2월 19일(목) (토, 일요일 / 공휴일 제외)

나. 시 간 : 오전 10시 ~ 오후 5시 ※ 점심시간 제외

다. 장 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, 9층) ☎ (02) 2241-2864

2. 열람내용

가. 장위13-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예비 추진위원장, 예비 감사 선거에서 사용하게 될 선거인명부 열람

3. 안내사항

가.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,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1)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·소유권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,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2) 제출서류 :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

- 1)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(방문)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2) 제출서류 :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,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

라.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

- 1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를 제출(방문)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 -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(※ 미성년자는 직접 선거권 행사 불가)
 -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 -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- 2) 제출서류
 -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,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류(※ 해당자에 한함),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※ 해당자에 한함),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※ 해당자에 한함)

마.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(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)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불가합니다.

※ 선거인명부 열람 관련 이의신청, 대리인 지정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장위13-1구역 정비사업 정보몽땅(<https://cleanup.seoul.go.kr/cafe/mainIndx.do?cafeUrl=wkddnl13-1>)에서 확인 가능하며, 관련 자료 등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